

Chapter 4.

WTO 규정과 MEAs와의 관계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과의 관계 /

1. WTO 규정과 다자간 환경협약 연계논의 개관

□ DDA WTO-MEAs 협상의제

- o DDA 전문, 제6조, 제31조, 제33조, 제51조 등은 무역과 환경 연계 이슈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o 동 규정 중 구체적으로 DDA 환경협상에 의제화한 항목은 제 31 조 1항에 명시되었음
- o 기존의 WTO CTE에서 논의된 의제보다는 상당히 논의 범위를 제한 함.
 - MEA상 의무에 기초한 특정무역의무(specific trade obligations) 와 WTO 규범간의 관계만 논의, 기타 MEAs 상 불특정 무역조치 및 관련 국내법에 기한한 일방조치 등을 논의대상 배제
 - WTO 와 MEAs 당사국들간의 관계에 한해 논의가능, MEA 당사국과 비 당사국간의 관계는 논의대상에서 배제함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과의 관계 /

1. WTO 규정과 다자간 환경협약 연계논의 개관

□ MEAs 상 무역관련 조치의 형태

- 협약 안에 무역관련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MEA가 체약당사국에게 허용하는 “무역(관련)조치”[trade-(related) measures]라 함은 WTO 규범이 적용되는 여하한 조치로서 정의할 수 있는 바, 이들 MEA에 규정된 무역조치는 다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즉, 하나는 당해 환경협약상 규제물질의 수출이나 수입의 제한 [금지] 및 일정한 요건하에서의 인가와 같이 무역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고전적 형태의 무역조치(classic trade measures)가 그것이며, 이것이 일반적임.
 - 다른 하나는 라벨링 요건(labelling requirements)이나 패키징 (packaging)과 같이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조치 이거나, 나아가 일부 MEA에서는 당해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의 금지와 같은 비무역적 규제조치를 규정하기도 함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과의 관계 /

1. WTO 규정과 다자간 환경협약 연계논의 개관

□ 무역조치 규정의 적용대상국을 기준으로 한 **MEA**의 유형

- 무역조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이들 MEA를 그러한 무역조치의 적용대상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함.
 - 즉, 첫째는 당해 MEA 협약 당사국들간에서만 그러한 무역조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MEA를 들 수 있는 바,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그러함.
 - 둘째는 MEA상 무역조치를 당해 협약 당사국들간에 적용함은 물론 비당사국(non-parties)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MEA가 있음. 가령 CITES, 바젤협약 등 다수가 이러한 유형의 MEA에 해당됨.
 - 셋째는, 당해 MEA 협약의 비당사국에 대해서만 그러한 무역조치를 적용한다는 특이한 규정을 두고 있는 MEA가 있는 바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가 그러함.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과의 관계 / 2. 주요 MEA 상의 무역규제조치 현황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무역조치 관련 규정-1)

- **당사국간 무역규제**
 - CITES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당사국들간에 있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 협약에 규정된 목적을 벗어난 이들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수출허가 내지 수입허가의 방법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음
 - 특히 CITES에서는 무역규제 대상 種을 그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I(상업적 목적의 국제거래가 공식적으로 금지되는 종), 부속서II(일정한 요건하에 교역을 허용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수출입국가의 허가에 따른 제한적인 교역이 가능) 및 부속서 III(각 당사국이 자국내 특정 동식물을 지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무역규제를 할 수 있는 종) 등으로 구분하여 각기 차등적인 무역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 주목됨
 - 동 협약 제8조에서는 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처벌 내지 반송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제14조에서는 당사국이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과의 관계 / 2. 주요 MEA 상의 무역규제조치 현황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무역조치 관련 규정-2)

- 비 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
 - CITES 제10조에서는 협약 비당사국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그러한 수출입허가서 및 증명서의 경우 상세한 요건을 열기하여 이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문서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비당사국에 의한 국제거래에 관한 문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당사국과의 무역을 제한 내지 금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과의 관계 / 2. 주요 MEA 상의 무역규제조치 현황

□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무역조치 관련 규정-1)

- **당사국간 무역규제**
- 당사국간의 무역규제에 관하여는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 제2조(규제조치; CFCs; 할론) 및 제3조(규제치의 산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적으로 동 의정서는 당사국간에 있어 동 의정서상 규제물질의 이전[무역]을 허용함.
 - 그러나 당사국들의 경우 동 의정서상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 일정에 따라 감축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사국간의 무역규제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됨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과의 관계 / 2. 주요 MEA 상의 무역규제조치 현황

□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무역조치 관련 규정-2)

- 비 당사국간 무역규제
 - 의정서 제4조에서는 비당사국(non-parties)에 대한 무역규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먼저 당사국은 비당사국에 대하여 규제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고, 비당사국으로부터 부속서 7에 구체적으로 열기되어 있는 규제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것 역시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규제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허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직접적인 무역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다음으로 당사국은 규제물질의 생산기술을 비당사국에 이전하여서는 안되고, 당사국은 규제물질의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품, 시설 또는 기술을 비당사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보조금, 원조, 금융 또는 보험상 지원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는 등의 비무역적인 규제도 부과하고 있음.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과의 관계 / 2. 주요 MEA 상의 무역규제조치 현황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무역조치 관련 규정-1)

- 당사국간 무역규제

- 협약 제4조에 따르면,

- 1) 당사국은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동 협약 제4.1.a조), 이 경우 당사국은 수입을 금지한 당사국에 대하여 수출을 금지해야만 함(동 제4.1.b조).
 - 2) 당사국은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 유해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음.(동 제4.1.e조)
 - 3) 유해폐기물에 대한 포장·표시·운송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동 제4.7조)

- 다음으로 협약 제6조에서는 수출국은 수입자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약 제8조에서는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처리될 수 없을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과의 관계 / 2. 주요 MEA 상의 무역규제조치 현황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무역조치 관련 규정-2)
 - 비 당사국간 무역규제
 - 바젤협약은 원칙적으로 유해폐기물 수출국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취급할 적절한 시설이 없거나 수입국에서 재활용이나 자원회수산업에 투입될 원자재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바젤협약 제4조 제5항에서는 수은, 카드뮴 등 45종의 유해폐기물을 지정하고,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협약 비당사국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음.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과의 관계 /

2. 주요 MEA 상의 무역규제조치 현황

□ 생물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무역조치 관련 규정

-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협약 당사국들간에 있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유전자원 원산국이 갖는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여 유전자원 원산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전자원 원산국이 당해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이동(transboundary movement) 즉, 교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런데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조치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동 협약은 당사국들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역시 협약에서는 목적만을 정해 두고 있을 뿐 구체적 조치는 각 당사국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어 명백하게 무역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특이함.
- 동 협약 제8조 (j)의 경우 국내입법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전통지식을 보전, 유지하고 이의 사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
 - 동 조항 성격을 개도국은 STO(특정 무역의무)로 해석하여 WTO 규정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장받으려 하는 반면 선진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과의 관계 /

2. 주요 MEA 상의 무역규제조치 현황

□ 바이오 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의정서로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LMOs**)의 국가간 이동 및 이의 환경에의 방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위험성을 막기 위한 의정서 / 주요 무역조치 관련 규정

- 동 의정서 제11조는 LMO의 식용 및 사료의 직접적 이용 및 그 가공을 위한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서 각국이 동 의정서 前文상 사전예방주의원칙(precautioinary principle)에 입각하여 LMO의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과학적 정보 및 지식의 결여로 인해 과학적 확실성이 없는 경우 수입당사국(the Party of import)은 식용이나 사료 또는 가공의 용도로 그러한 LMO의 輸入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LMO의 국가간 이동[교역]을 규제할 수 있는 수입당사국의 재량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음.
- 동 의정서 제10조와 11조는 사전예방원칙을 서술하고 있는 바, 동 원칙은 WTO 위생 및 검역조치 (SPS)협정과 상충될 여지가 있음.
- 동 의정서 제18조상 취급, 운송, 포장 및 명기사항은 현재 정부간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는 바, 이는 WTO 무역관련기술장벽(TBT)협정과 상충할 여지가 있음.
- 동 의정서 제26조는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바 이 역시 WTO/SPS협정과 상충 될 여지가 있음.
- 한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24조에서는 비당사국과의 관계에서 LMO의 국경을 넘는 이동[교역]이 동 의정서의 목적과 합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러한 국경을 넘는 이동에 관해 비당사국과 협정 내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임.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과의 관계 /

2. 주요 MEA 상의 무역규제조치 현황

□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FCCC) 주요 무역조치 관련 규정

- **기후변화협약**
- 기후변화협약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무역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동 협약 이행 조치는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바, 협약 제4조 2항a는 선진국이 온실 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제한하는 국가정책을 채택할 의무를 부과함.
- 한편 협약 제3조에서는 각국의 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교토의정서**
- 교토의정서 제2조 1항 a호에서는 부속서 1의 당사국이 제3조의 배출량 감축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행할 수 있는 국내 정책 및 조치의 리스트를 열기하고 있음.
 - 이밖에도 국내 정책의 부수적 조치로서 당사국이 공동으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의정서 제6조상 공동이행, 제12조상의 청정개발체제 및 제17조상의 배출권거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각국의 의무이행을 위한 경제적 조치 시행은 무역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즉, 리스트중 하나인 에너지 효율성 강화 정책의 경우, 선진국은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및 가전제품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효율기준을 적용하여 기준미달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입 규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바, 이와 같은 조치는 무역관련 기술장벽을 형성할 수 있게 됨.
 - 또한 리스트중 하나인 에너지세[탄소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의 양을 기초로 수입 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NPRPPM 이슈에 해당하며, 따라서 **GATT와의 상충가능성이** 있음.
 - 이밖에 탄소 및 에너지집약성에 대한 에코라벨링 역시 **GATT 제3조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음.
- 그 밖의 신축성체제의 운영 방안에 있어 배출권거래제도/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는 **GATT상 MFN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과의 관계 / 2. 주요 MEA 상의 무역규제조치 현황

-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 PIC**) 주요 무역조치 관련 규정

- PIC협약 제11조에서는 모든 수출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약 대상 특정 물질의 수입당사국의 수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자국내 유관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해 전파하고, 수입당사국의 수입조건 등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함.
- 동 협약 제12조에서는 특정 화학물질의 수입을 승인하지 않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만 승인하기로 결정한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의 당해 화학물질 생산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를 금지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과의 관계 /

3. WTO 협정상 환경관련 무역조치 규정

■ GATT 제20조

- 가장 대표적인 환경규정인 GATT 1994 제20조 (b)호에서는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g)호에서는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와 더불어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를 회원국이 채택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조 前文 규정[前文](chapeau)에서는 회원국이 그러한 조치를 채택 또는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음.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TBT)

-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제2조 제2항과 제5조 1항 및 4항 등에서는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무역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위생 및 검역협정 (SPS)

- WTO 위생 및 검역협정 제2조, 제3조 및 제5조 등에서도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위생 및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바 동조에 따른 위생 및 검역조치는 최종 제품과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에 모두 적용됨.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과의 관계 /

3. WTO 협정상 환경관련 무역조치 규정

■ WTO 농업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 WTO 농업협정 부속서 2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8조 등에서도 환경관련 허용대상 지원 및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 협정(TRIPs)

-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제27조 2항 및 3항 등에서도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보호 또는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회원국 영역내에서의 영업적인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14조 (b)호 등에서는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무역규제조치는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WTO 협정 前文

- WTO 협정 전문(preamble)에서는 회원국에게 무역 및 경제관계에서 지속적 개발 목표에 따라 세계자원의 최적 사용을 허용하면서, 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도모하고, 상이한 발전단계에 따른 각자의 필요와 관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다만, 조약의 전문(preamble)은 법적 구속력 있는 본문과 달리 조약 해석의 지침으로 참고될 뿐임.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과의 관계 /

4. 자유무역 확대와 환경보호의 균형

- ◆ WTO규범과 MEA상 무역조치 규정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WTO/CTE 회의에서의 다양한 해결방안 논의의 기저에는 자유무역론과 환경보호론의 대립구조가 전제되어 있으며, 그 위에 양대 이론체계를 배경으로 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혀 있음
- 무역질서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유무역론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가 교역을 불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제약하는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가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서 남용 내지 오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가능함.
 - ⇒ 이러한 관점은 WTO/GATT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그러한 무역규제 조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MEA와 WTO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WTO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능케 함.
- 환경보호론의 입장에서는 무역의 확대가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환경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무역규제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임.
 - ⇒ 이러한 관점은 MEA와 WTO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환경보호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MEA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능케 함.